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0-141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2000년 9월 7일 산업자원부장관

##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2 조 및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절약전문기업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법령 및 기타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기준"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2. "에너지사용자"라 함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3. "절약시설설치"라 함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 또는 기존 에너지 사용기기의 성능개선 등을 말한다.
4. "에너지절감량"이라 함은 절약시설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사용량 또는 에너지비용의 감소를 말한다.
5. "성과배분"이라 함은 절약시설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을 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 제 2 장 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시 적용기준

제 4 조(적용기준) ① 법제 6 장의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제 92 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절약전문기업 등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일한 복수자격등록은 인정하지 아니하되 1종 및 2종을 동일인이 등록하는 경우 1종 및 2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기술자격자는 해당기술자격자 1인 이상으로 같을 수 있다.
2. 해당기술자격자 인정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별표 1(생략))에 따라 구분하며, 기술사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기사는 산업기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제2호의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의 인정은 1종의 경우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에너지분야로 하며, 2종은 건축분야에 한 한다.
4. 동일업체가 1종 및 2종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공통으로 해당하는 장비는 중복 인정하며, 1대의 장비로 등록기준 중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이를 각각 1대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적용기준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 5 조(사업계획서 작성요령) ① 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과 함께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요령은 「별표 2(생략)」와 같다.

제 6 조(등록증 교부) ① 공단이사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와 같이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2(등록기준 및 제 4 조의 적용기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 시행규칙 제6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산정은 공휴일과 등록신청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현장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 민원사무처리내규에 따른다. 단, 현장확인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7 조(등록기준 유지등) ① 절약전문기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절약전문기업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본금 변경
2. 등록 기술인력 또는 장비의 변동
3. 주소 또는 상호의 변경

## 제 3 장 절약전문기업의 보고 및 검사등

제 8 조(영업실적 보고 등) 절약전문기업은 법제8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당해년도 계약실적을 포함한 영업보고서를 별지 제1호 서식(생략)에 따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검사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공단직원으로서 하위급 법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약전문기업의 사무소·사업장·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절약전문기업이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 시설관리상태, 에너지절감량, 성과배분 관련사항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절약전문기업 및 관계인은 필요한 자료제출 등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단직원은 법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공단직원신분증(공단이사장 발행)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절약전문기업에 대하여 사유서 제출 또는 개선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 10 조(등록의 취소요청 등) 공단이사장은 절약전문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된 경우
3.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 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절약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본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미 등록된 업체가 변경 또는 추가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